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법 시행만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 형 우

I.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가. 채무자는 2014. 2. 14.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3220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채무자는 제1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 월 평균 수입 120만 원
- 월 평균 생계비 1,027,417원(채무자 및 피부양자 1인 총 2명)
- 월 평균 가용소득 172,585원
- 변제기간 2014. 5. 10.부터 2019. 4. 10.까지 60개월간
-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예정액 10,355,100원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7.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최장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이하 ‘개정규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므로(부칙 제1조 단서, 제2조 제1항), 2018. 6. 13.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¹⁾ 그 중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이하 ‘기간단축 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무자가 기간단축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수행 중인 채무자만 제출 가능
- 기간단축 변경안 작성 기준 : ①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로 변경(변제개시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청산가치 보장 등의

1)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2018. 1. 8. 시행), 대상결정 후 2019. 3. 26. 폐지되었다.

사유로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② 청산가치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금액이상 변제 요건 충족 필요

바. 채무자는 2018. 2. 1. 인가된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 5. 20.부터 2018. 3. 20.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기간단축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결정

1) 제1심 법원은 2018. 3. 13.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변경안을 송달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통지하였다.

2) 개인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2018. 5.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3) 채무자는 2018. 5. 15.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로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연금산정용 가입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소득이 26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친척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하였다.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제1심 법원은 2018. 5. 16. 추가조사나 심리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5) 재항고인은 2018. 5. 30.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2018. 9. 7. 채무자가 이 사건 변경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면책결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서울회생법원 2018. 9. 13.자 2018라100208 결정)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상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사건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한 채무자의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지침은 ①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 ③ 이해관계인 사이의 형평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변경안 역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안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대상결정의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개정 전 규정)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

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적용제외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및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법원으로서 이러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II. 연구

1. 들어가며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계획안이 정한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²⁾

초기 개인회생절차의 최장 변제기간은 8년이었는데,³⁾ 2005. 3. 31. 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의 수행률이 떨어지고 도산절차로의 회귀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과⁴⁾ 변제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제4판, 박영사(2014), 341

3)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1조 제5항

4)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약 30% 정도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폐지결정을 받았다(조인,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 도산실무 어드밴스 과정 발표문 1)

되어 왔다. 이에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최장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개정되었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8. 6. 13.로 정해졌다(부칙 제1조 단서).

이와 같은 개정법의 시행과 앞서 본 서울회생법원의 이 사건 업무지침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대해 변제기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다.⁵⁾ 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일치된 견해를 찾지 못하고 각 법원의 재판사항으로 정함에 따라 각 법원별로 업무처리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의 혼란이 가중되었다.⁶⁾

아래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 변경을 위해 변경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와 변경사유의 범위에 관해 살펴본 다음,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만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법원의 업무처리 방안과 대상결정의 의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위 논의에 필요한 전제로서 변제계획 인가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변제계획 인가

가. 개념

변제계획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5) 개시결정 전 사건,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언제든지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개정 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을 갖춘다면 5년 이하의 변제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데 각급 법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6)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로서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금이 없는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기간의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로 변경한 기간단축 변경안의 제출을 허용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변경안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변제기간에다가 잔여 변제기간 36개월 이상을 가산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을 허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기간단축 변경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청년 개인회생사건, 모성보호사건, 다자녀가구,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용하였다. 그 외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시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은 인가 후 사건의 기간단축 변경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이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을 때 변제계획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 변제계획의 인가이다.⁷⁾

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와 이의를 진술한 경우(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⁸⁾ 채무자회생법의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고⁹⁾ 실무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¹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40

8)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4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46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 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 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요건을 충족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이 이의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 산정을 둘러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있다.¹¹⁾

2)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¹²⁾,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음에 있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면책이 될 수 있는 제도 하에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은 최저변제액 규정과 더불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¹³⁾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아니하여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 인가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가용소득이 전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가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다면 또다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요건을 검토받아야 하는 등 절차의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49

12) 실무상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2019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 산정금액은 1인가구는 1,024,205원, 2인가구는 1,743,916원, 3인가구는 2,256,020원, 4인가구는 2,768,121원이다.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52

지연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 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그 밖에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

다. 변제계획 인가절차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1항).

회생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고 나면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라. 변제계획 인가효력

1) 권리변경효력의 불발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그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그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 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⁴⁾

2) 실권의 효력 불발생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실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당시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가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변제를 받고 나아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할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오히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들보다 더욱 강력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¹⁵⁾

3)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귀속과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¹⁶⁾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8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87

16)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 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채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해 속행할 수 있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그 결과 위 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게 된다.¹⁷⁾

3.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가. 개념 및 절차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장 5년¹⁸⁾까지로 되어 있어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변제계획 변경이라 한다.¹⁹⁾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인가결정 전에 하는 변제계획의 수정과 구별된다.²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인가 전 변제계획안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590-591

18)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604-605

20)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제출된 경우의 절차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²¹⁾ 따라서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변경사유 필요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²²⁾ 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사유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1) 상정 가능한 견해²³⁾

가) 제1설 : 변경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의 송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통지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최저변제액의 제공, 가용소득 투입의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하면 되고, 가용소득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인가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사유나 변경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 촉진이라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점,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채무자들의 변제수행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21)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3) 강경미,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의 변경, 13-15

나) 제2설 : 변경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

변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사유의 발생이 필요하다는 견해이고, 대상 결정의 입장이기도 하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임의로 또한 수시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인가결정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변제계획의 안정적인 수행도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다) 제3설 : 제출자에 따라 허용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견해²⁴⁾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요건 외에 별도로 변경사유가 필요하지 않는 반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가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채무자는 언제든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은 언제든지 허용하되,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채무자에게 인가 후 가용소득의 감소가 없으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불인가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 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임에도 가용소득이 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절차의 안정을 해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초 변제계획 인가 이후예상을 뛰어 넘는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의 전제인 인가 후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다.

라)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사유와 변경사유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사유와 변경사유를 구별하여 전자는 그 사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후자는 변경사유가 필요하되 이를 인가요건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단계에서부터 변경의 허용여부를 고려하

24) 김희중,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의 절차 및 인가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103호(2015년 상), 444-445

여 제출사유를 제한하는 주장은 제출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이 아닌 제출에 의하도록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것(채무자회생법 제231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열지 않을 근거가 없는데, 제출사유에 제한이 있다고 볼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변제계획 변경안은 이를 송달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단계에서 미리 인가가부를 판단해 본 다음 인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제계획 변경안 송달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최 절차를 생략하고 불인가결정을 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검토

제1설은 채무자회생법 규칙 제91조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변경사유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 점,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경우 적극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려는 성실하고 의욕적인 다른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변경사유를 요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내용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설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이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자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아무런 구별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채권자의 경우에만 변경의 필요성을 요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채무자로서도 원금변제충당의 이익²⁵⁾, 재신청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등이 있으므로 폐지 후 재신

25)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을 경우 충당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규정에 따른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채무자는 여전히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기존 수행한 부분이 원금에 먼저 충당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청을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채무자에게 완화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4설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문언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점, 위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일률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안 송달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시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사유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않거나, 인가결정 당시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채권자들의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회생계획 변경안을 불인가²⁶⁾할 사건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설이 타당하다.

다. 변경사유의 범위

1) 상정 가능한 견해

가) 제1설 : 기존 변제계획 인가 시와 비교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변동되고 이러한 가용소득의 변동이 인가 후에 발생하고 인가 당시 예측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²⁷⁾

나) 제2설 :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채무자가 기존의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거나 기존의 변제계획대로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에게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고 능동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용소득 감소를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용소득 증가 등을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보다 현저한 변경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²⁸⁾

2) 검토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이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26)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7) 조영기,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불수행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고찰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61집(2016), 416-417

28) 조인(각주4), 11-13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여 인가 후 채무자가 종전의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변제계획의 변경을 불허할 경우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폐지 후 재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상 변제계획 변경은 변제계획 수행 도중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의 증가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개별 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원래의 인가된 변제계획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과 변경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되, 아래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⁹⁾

첫째, 인가결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어야 한다. 인가결정 당시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피부양자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면 이는 최초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가용소득 산정자료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장차 피부양자의 증가나 치료비 지출을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³⁰⁾

둘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이어야 한다. 특히 개인 회생절차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장래 수입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해가는 절차이므로, 실직 또는 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변경사유로 판단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직·이직에 의한 소득감소가 채무자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실직·이직에 의한 소득감소 후 채무자가 변제수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원래의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이어야 한다. 실직 후 재취업을 하였는데 그 소득이 종전에 받던 금액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에 기존보다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변제금의 변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어야

29) 강경미(각주23), 22-24

30) 다만, 인가 후 임신을 하였다거나, 인가 후 병세 악화로 통상의 예상을 벗어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한다.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은 크게 가용소득을 변경(채무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소, 채권자가 제출하는 증가)하는 방식과 변제기간을 변경하는 방식 및 양자를 혼용한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안의 내용 또한 그 가운데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해야 한다.

다섯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수준이 인가결정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예컨대 정기 승급에 따른 급여인상의 경우 변제계획 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이므로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파격적인 승진이나 전직 등으로 급여가 크게 상승한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해 예상외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당되는 경우 등은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³¹⁾

라. 개정규정의 시행이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정 가능한 견해

가) 제1설 : 긍정설

인가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으므로 인가 후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기존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은 폐지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신청을 하는 채무자들만 구제하겠다는 관점은 개정 법률안의 취지나 회생법원의 존재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달리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의 효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가 후 변제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되는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기대이익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확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나) 제2설 : 부정설

변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가용소득이나 재산의 증감 등으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대상결정의 입장이기도 하다. 인가 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으나, 향후 접수되는 사건의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된 것에 불과하고, 중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605-606

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가 후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총 변제예정액에 관하여 높은 신뢰 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그러한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 검토

살피건대, 개정법 부칙규정에서 그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개정법의 취지와 채권자들의 기대이익 보호를 비교형량하여 후자를 더 보호함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개별 사건들마다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개별적인 상황이 서로 다름에도 단지 개정법의 취지만을 내세워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제계획 인가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설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마. 변제계획 변경안의 처리방법

1)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증감 등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가용소득이나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2) 심리 결과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이라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불인가결정을 해야 한다.

3) 반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다시 조사하여야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다음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한편,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변제계획 변경제도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개정규정의 시행과 상관없이 소득이나 재산의 증감을 원인으로 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는 절차폐지로 종국처리 되었을 사건들이 다시 변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법원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5) 우선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 추가가 불가능하고,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이의기간 부여 및 불복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절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채권자들의 연락처나 주소 및 그 변동사항도 인가 전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및 인가절차에서 이미 법원에 신고되었거나, 적절한 송달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해관계인들에게 1회 교부송달 시도 후 송달불능 시에는 발송송달 처리하는 식으로 송달업무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6)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하는 가용소득 변동자료에 대한 심사를 간이화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실질적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산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가용소득의 변경사유를 조작하는 경우 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유지를 위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즉,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불인가결정을 해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허위진술로 인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로서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절차폐지를 검토해야 한다.³²⁾ 채권자들은 추후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완수를 이유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망을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626조³³⁾에서 정한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³⁴⁾

III.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이 정한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제계획

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각주2), 620

33)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4) 조영기(각주27), 444-447

변경에 대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규정의 시행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각 법원별로 견해의 대립이 있던 쟁점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관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라고만 판시하였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시는 없어 변경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부분은 대상결정을 기초로 하는 향후 다수의 실무례가 축적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